

2013년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

중소기업청에서는 대·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공정한 수탁·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상생법)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「2013년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13일
중소기업청장

□ 신청대상

- 2012년도 수탁·위탁거래* 실적이 있는 기업
(단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)
- * 수탁·위탁거래 :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(위탁기업)이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(수탁기업)에 위탁하고,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
1.

□ 선정요건

- 아래의 ①, ②, ③,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
-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 방식*으로 결제하였을 것
* 어음대체결제 방식 : 기업구매전용카드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, 구매론 제도 등
-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- ④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

□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- 상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(최초 1회)
- 2년간(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) 수탁·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
- 공공구매 시 중기 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 가점(1점)
- 신용평가기관(신보, 기보) 신용평가 시 우대

[기술보증기금]

- ① 신용도 평가 시 기업현황자료 평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
- ② 지점장 승인 가능 보증한도 상향 조정(일반기업 최대 1억원 → 우수기업 최대 2억원)으로 1억원 초과금액 보증 시 본사의 승인절차 생략

[신용보증기금]

- ① 일반보증한도를 신용도 취약기업에 해당되더라도 30억원 유지
- ②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우대부문 보증 대상자금 만큼 자기자본 한도 증가
- ③ 보증요율을 기업의 특성에 따라 0.1~0.2% 차감(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0.6% 차감) 등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(가점 1점)
-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추천 평가 (가점 1점)

□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

- 선정절차

구 분	일 정
사업공고 및 신청·접수	'13. 6.13 ~ 7.5
서류심사 및 현장조사	'13. 7. 8 ~ 7.19
최종 심사 및 우수기업 선정	'13. 7.22 ~ 7.26
선정확인서 발급	~ '13. 7.31

○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13. 6. 13(목) ~ 7. 5(금)
- 제출서류 : ①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신청서 1부
 ② 재무제표 증명원 1부
 ③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
- 신청방법 : 본사(또는 주된 사업장)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
 방문 또는 우편 접수(마감당일 도착분 한)

□ 문의처

기관명	담당부서	전화
서울청	기업환경개선과	02-509-6756
부산·울산청	기업환경개선과	051-601-5133
대구·경북청	기업환경개선과	053-659-2264
광주·전남청	기업환경개선과	062-360-9136
경기청	기업환경개선과	031-201-6957
인천청	기업환경개선팀	032-450-1142
대전·충남청	기업환경개선과	042-865-6141
강원청	기업환경개선팀	033-260-1622
충북청	기업환경개선팀	043-230-5324
전북청	기업환경개선팀	063-210-6431
경남청	기업환경개선팀	055-268-2561
본청	판로정책과	042-481-3979

※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 및 지방
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

- 붙임 1.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신청서 1부
 2. 거래 수탁기업 명단(양식) 1부

신청서 작성요령

- 1) 「수탁기업수」는 2012.1.1~2012.12.31까지 귀사가 물품·부품·반제품 및 원료(이하 물품 등)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여 귀사에 이를 납품한 거래기업수를 말함
- 2) 「연간 위탁거래금액」은 2012.1.1~2012.12.31까지 모든 위탁거래금액을 말하며, 현금결제금액(수표, L/C포함) + 어음결제금액 + 어음대체결제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임(단위 : 백만원)

3)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금액 비율

$$= \frac{\text{위탁거래금액의 합계}}{\text{2012년도 매출액(부가세 신고액 등)}} \times 100$$

※ 신청요건 : ①, ②, ③, ④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- 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 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
- 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- ④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

※ 어음대체결제방식

-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: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
- ② 기업구매자금대출 :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용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
- ③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: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
- ④ 구매론 :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구매론이라는 대출채권으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
- ⑤ 상환청구권이 없는 네트워크론 :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

